대법 "27일 도청 진압작전 발포명령 있었다"

당시 軍 명령문건 "작전 범위내 사람 살해해도 좋다" 명시
대법 "내란 후 정권 장악한 수괴" 못박고 무기징역형 선고

판결문으로 본 전두환 망언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 세력 15인에 대한 상고심(12·12군사반란과 5·18내란사건)에서 전원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전두환에 대해선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로 지목,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펴낸 회고록에서 주장한 "나도(우리도) 5·18의 피해자", "발포명령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궤변은 정확히 20년 전 대법원 확정 판결문 앞에 설자리가 없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전두환은 5·17조치(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통해 무력으로 내란을 일으킨 후 정권을 장악한 내란 수괴"라고 못박았다.

특히 발포명령 관련, 판결문은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명령에는 '작전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작전명령에는 살상행위를 지시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적시됐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사태를 폭동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강변했으나, 정작 대법원은 '피고인 전두환 등 일당의 광주 유혈진압 행위는 폭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피고인 전두환 등 일당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광주시위 진압행위에 폭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계엄군이 난폭하게 광주시민의 시위행위를 진압한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협박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등)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엄군을 이용해 난폭하게 시위를 진압했다"고 지적했다. 12·12군사반란을 통해 군권을 잡고 5·17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내린 후 광주를 유혈진압한 일련의 행위를 '국헌문란을 목적 달성을 위해, 정권 찬탈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고, 정당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회고록에서 '무기고 등을 습격하는 시민들을 향해 저지른 진압은 시민 살상이 아니며, 국군에 의한 시민 희생은 없다'는 억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내란을 목적으로 한 살인 행위"로 규정했다.

'나는(전두환)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제물', '광주사태 충격이 가시기 전 대통령이 된 것이 원죄로 십자가를 지게 됐다', '나의 집권은 시대적 요청이지 나의 욕망이 아니다'는 취지의 그의 주장 역시 대법 판결문 앞에 설자리가 없다.

판결문은 "전두환 등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은 광주시위를 조속히 제압해 다른 곳으로 시위가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바꾸어 말하면 '집권에 성공할 수 없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단정한 뒤 "광주재진입작전(1980년 5월 27일)을 실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내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내락목적살인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20년 전 조목조목 밝힌 바 있다.

5·17조치(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역시 대법원은 "(국민을 위협하고 옥죄는) 일종의 협박행위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성격을 규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7조치에 대해 "시국수습을 위한 조치로, 애초부터 나는 권력 찬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14 해짐 18:57 달뜸 13:09 달짐 02:26

목포신항은 맑았으면…

아침부터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 돼 확대되겠다. 7일까지 최대 80㎜.

◇지역별 날씨 (℃)

광 주	비	12/17	보 성	비	8/15
목 포	비	11/16	순 천	비	10/15
여 수	비	11/15	영 광	비	9/16
나 주	비	9/16	진 도	비	12/15
완 도	비	12/17	전 주	비	10/16
구 례	비	8/15	군 산	비	9/16
강 진	비	10/16	남 원	비	8/15
해 남	비	10/16	흑산도	비	9/12
장 성	비	9/1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남서	0.5~1.5
	먼바다	남동~남	1.0~2.0	남~남서	1.0~2.5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	남~남서	0.5~1.5
	먼바다(동)	남동~남	0.5~1.5	남동~남	1.0~2.5
	먼바다(서)	남~남서	1.0~2.0	남동~남	1.0~2.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1:24	09:08
	14:50	21:28
여수	10:56	04:19
	23:02	17:07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낮음

◇주간 날씨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2/15	13/19	12/19	10/19	8/19	9/19	9/19

팀 셔록 "5·18 당시 軍은 전두환 통제 아래 있었다"

'5·18 문건 분석 계획' 발표
"全, 피해자라니 어불성설
헬기사격 부상자 치료 의사 만나"
5월까지 기밀문서 분석·토론회

4일 팀 셔록(66)은 "전 전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켰고, 5·18 당시 모든 군인들이 그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이(전두환) 5·18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셔록은 이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5·18문건 분석 등 연구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광주시에 기증한 문서 가운데 '발포 명령자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발포 명령은 당시 (모든 정황을 볼 때)한국 군부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980년 5월 당시 미국 문서를 살펴보면 '한국은 현재 통제 불능의 상태다.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며 "미국 정부는 '5·18을 군사적 개입이 필요한 내부로부터의 위협'으로 봤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입장을 갖는데 신군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했다.

셔록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갖고 있는 (1980년)5월21일자 문건에는 헬기 기총소사 관련 내용이 없지만 1981년 다시 광주로 돌아와 5·18 때 많은 부상자들을 수술했던 의사를 만났다"고 소개하면서 "그분을 통해 헬기 사격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셔록은 5월 말까지 광주에 머물며 지난 1월 자신이 광주시에 기증한 '체로키 문서' 등 59개 기밀문서(3530쪽 분량)를 분석하는 등 광주시와 함께 5·18진상규명 작업을 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이 4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밀문서 연구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와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통신기록 '체로키 파일'을 폭로한 바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 경찰간부, 여경과 부적절 교제 '물의'

여수의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간부와 여경이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서 소속 지역경찰 간부 A(46) 경감과 함께 근무하는 여경 B(28) 순경의 부적절한 이성교제가 신고돼 감찰 조사 중이다.

여경 B 순경은 결혼한 유부녀로, A 경감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며 교제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 순경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은 A 경감과 B 순경의 근무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 경감을 여수경찰서로 인사 조치한 뒤 감찰 조사 중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이들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아니 벌써?… 일본뇌염 주의보

제주서 '작은빨간집모기' 발견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4일 제주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적으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각종 질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생후 12개월~만 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사백신은 5회, 생백신은 2회 접종하는 등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백신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열이나 화학약품으로 불활성화해 생산한 백신이며, 생백신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약독화해 생산한 백신을 말한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반지와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고, 신발이나 양말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모기를 유인하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야외에서 잠을 잘 때도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

'가격 담합' 지역 가스회사 3곳 과징금

공정위 광주·영암·광양 적발

일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광주·전남 지역 가스회사들이 공공기관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 등 3개사에 과징금 1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광주신일가스와 광양종합가스에 각각 6300만원, 영암신일가스에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총 23건, 21억원 규모의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는 수소·액화질소 등을 압축한 것으로 발전기 냉각, 물탱크 압력조절, 작업복에 묻어있는 방사능 농도측정 등에 사용된다.

이들은 모두 특정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관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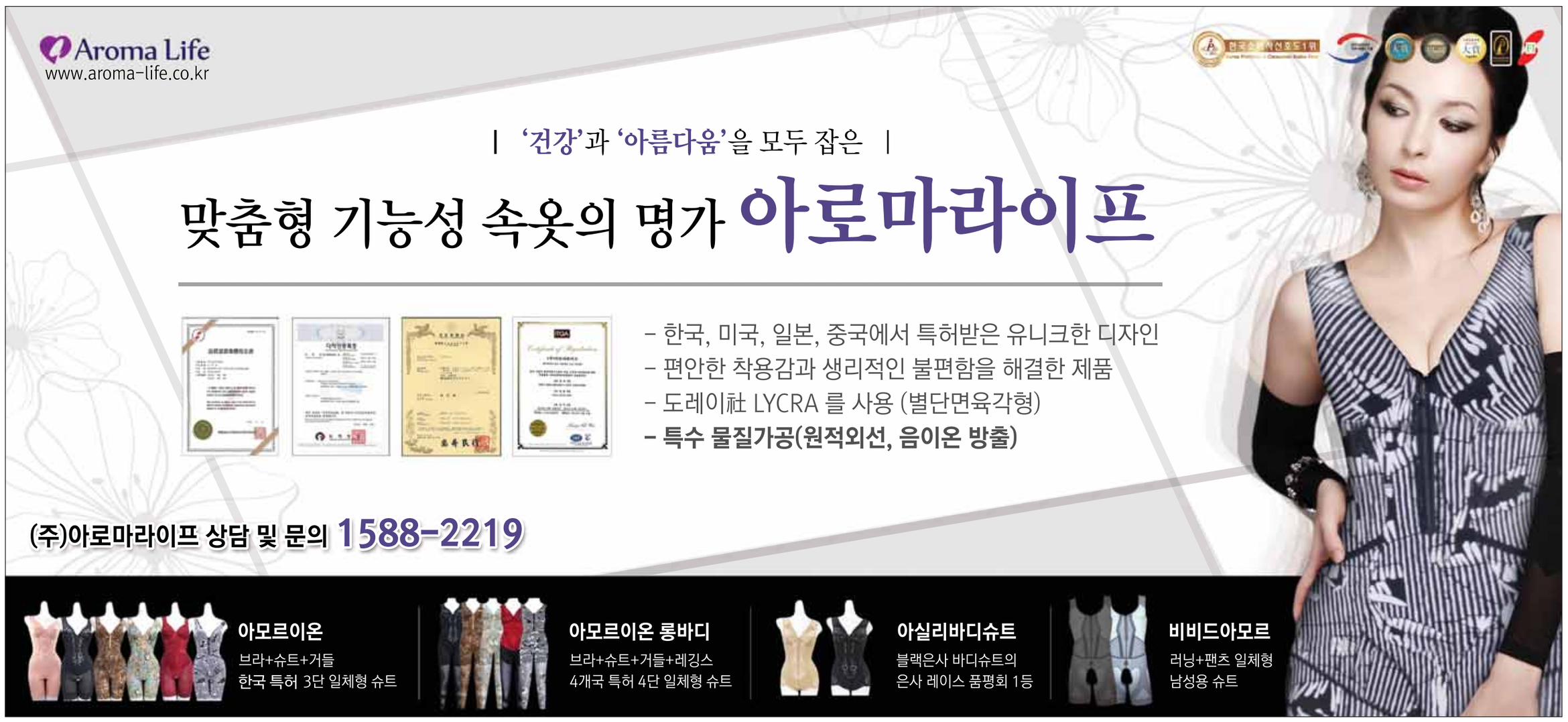
이들은 가족회사인 점을 악용해 입찰담합을 더 쉽게 모의하고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